-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646호

2021. 08. 31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08. 20.
윤인숙 의원, 박종호 의원, 정순희 의원 외 4인

나. 회부일자 : 2021. 08. 20. 행정재경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
2021. 08. 31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박종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21조에 따라 조문에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을 개정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문 중 "심신장애" 또는 "심신상의 장애", "심신쇠약"이라는 표현을 "장기간의 심신쇠약"으로 일괄 정비함(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가. 개정 취지

○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 "심신장애" 또는 "심신상의 장애", "심신쇠약"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연상시키는 용어를 "장기간의 심신쇠약"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 내용 및 종합의견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8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21조는 현실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.

○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보고 드림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9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